

발간등록번호

11-1210000-000451-14

정부혁신

보다나온 국세청



2020년 알기 쉬운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Foreign Financial Accounts Reporting 2020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 머리말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외탈세와 불법적인 재산반출 행위가 큰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로서 해외금융자산 신고제도를 신설·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2011년 6월 처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년간 성실하게 신고해주신 납세자 및 관련 종사자 여러분의 협조에 힘입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한 기반으로 확고히 정착하고 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책자는 납세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직원들의 신고상담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고서 작성사례 및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함께 수록하여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세법개정 사항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의 예규와 사례도 보강하였으니 202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납세자 여러분들과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이해하는데 유익한 안내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5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한눈에 보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이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신고의무자

- 신고대상연도(2019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
 -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자
 - (외국인)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 *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의무 있음

■ 신고기준금액

- 2019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 신고대상

- 2019년의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예금·적금, 증권, 보험, 펀드 등)

■ 신고시기 및 방법

- 2020년 6월(6.1~6.30.)에 2019년도 보유계좌정보를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미(과소)신고금액의 20% 이하
- (소명 의무) 미(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소명요구 불응 또는 거짓 소명시, 미(거짓) 소명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 (명단공개)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공개
- (형사처벌)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병과가능)

■ 신고포상금

-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내용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계좌번호, 계좌잔액 등)를 제공한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
- * 탈세제보 포상금 또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중복지급

한눈에 보는 주요 개정사항



■ 2020년 신고부터 달라지는 내용

- 재외국민 신고면제 요건이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에서 1년 전부터 183일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 외국법인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 지배할 경우 그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 계좌 신고의무가 법인주주(16년 신고시 신설)에서 개인주주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조약 체결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
- 미(과소)신고금액 자금출처 소명의무가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2019년 신고부터 달라진 내용

- 신고 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하되어 신고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벌금 부과율이 20% 이하에서 13% 이상 20% 이하로 강화되었습니다.

■ 2017년 신고부터 달라진 내용

- 재외국민 신고의무 면제자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재외국민 중 신고의무 면제자의 기준이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경우에서 183일 이하인 경우로 축소되었습니다.

■ 2016년 신고부터 달라진 내용

-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사항이 강화되었습니다.
 - (벌금 인상)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10%→20%
 - (과태료 인상) 미(과소)신고 금액에 따른 과태료 부과율 4~10%→10~20%
 - 신고의무 위반금액에 대한 미소명 금액에 부과하는 과태료율 10%→20%
- 만기 시에 지급보험료가 없고 사고·위험 보장 목적의 소멸성 보험계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금전신탁업,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Contents

2020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고제도 안내 1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소개	12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14
3.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16
4.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19
5.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금액	21
6. 해외금융계좌 신고 방법	23
7. 해외금융계좌 관련 국외소득신고	25
8.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26
9.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27
10.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30
11. 신고포상금 제도	31
12. 해외사례 소개	34

신고서 작성사례 2

1.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신고서 작성사례 ...	38
2. 차명 계좌의 경우 신고서 작성사례	44
3. 홈택스 전자신고 요령	50



자주 묻는 질문(FAQ)	3	1. 신고의무자 - 개인	60
		2. 신고의무자 - 법인 등	62
		3.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63
		4. 주식 등 금융계좌	66
		5. 신고대상 판정 기준 및 평가	68
		6. 환율 적용 및 신고 방법	70
		7. 과태료	72

외국인을 위한 안내 Introduction for Foreigners	4	1. Introduction to the Reporting	78
		2. Filing Forms	82

관련법령	5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88
		2. 조세범 처벌법	98
		3. 조세범 처벌절차법 및 시행령	99
		4. 소득세법 및 시행령 · 시행규칙	102
		5.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	106
		6. 기타 관련 법령	112
		(참고) 탈세제보 안내	115



2020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1. 신고제도 안내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소개	12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14
3.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16
4.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19
5.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금액	21
6. 해외금융계좌 신고 방법	23
7. 해외금융계좌 관련 국외소득신고 ...	25
8.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26
9.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27
10.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30
11. 신고포상금 제도	31
12. 해외사례 소개	34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무엇인가요?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 해외금융계좌 잔액(현금·주식·채권·펀드·보험 등 모든 자산)의 합이
-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그 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도입이 되었나요?

미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해외탈루세원의 회복과 해외유출자본의 회수·유입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등 역외자산의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역외탈루세원을 파악하고 세원관리의 기반을 마련하여 해외로 부당 유출된 자본을 정상 과세권 내로 유인하고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고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2011년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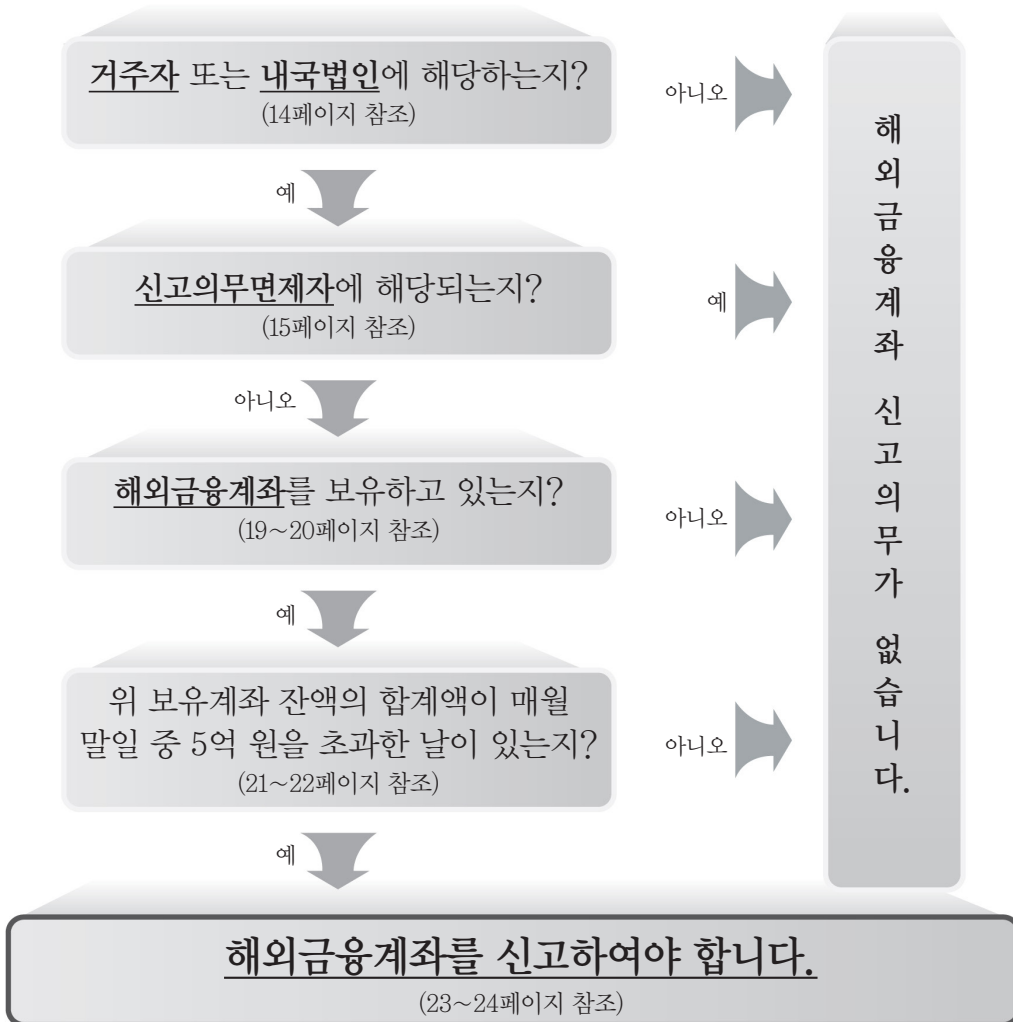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37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51조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8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66조



어떻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인지 알 수 있나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신고의무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인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범위는?

1.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2019.12.31.) 현재
 2.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비거주자 · 외국법인은 신고대상 아님)
 3.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닌 경우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거주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 규정에 의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102~105페이지 관련 법령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와 거소

- 주소 :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소득세법 시행령 §2①)
- 거소 :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2②)



내국법인은 어떤 법인인가요?

-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해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합니다.



신고의무면제자는 누구인가요?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4⑤)

구분	신고의무 면제자 요건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 ^{*1}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 ^{*2} 가 183일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등, 기타 면제기관	금융회사 등 ^{*3}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4}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5}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가 제출된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 1.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
- * 2.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고,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봄.(소득세법 시행령 §4)
- *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
-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중개회사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 * 5.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상세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차명계좌의 경우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 계좌의 명의자와 그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4④)
- 다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중 어느 하나가 다른 신고의무자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함께 신고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다른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실질적 소유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⑤ 본문)

- 명의와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
-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인을 실질적 소유자로 간주하되 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

■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아니하는 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⑤ 단서)

- ①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자본시장법 §6⑤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6 참조)
 - *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것에 한하여 적용
- ②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 ③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의 신탁업자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 ④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 ⑤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관련예규

▶ 선박투자회사의 해외자회사 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등 해당여부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선박투자회사는 해외자회사(SPC)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해외자회사(SPC)는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2, 2011.10.7.]

▶ 실질 소유자인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 명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 직·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의 실지명의로 의하지 아니한 계좌에 해당하고 당해 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지분을 및 조세조약 체결여부 등과 무관하게 동 조문에 따라 실제 소유자인 내국법인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76, 2016.6.27.]

▶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판단 시 주식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간접으로 소유한 내국법인’에 대한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판단 시 주식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에 관한 질의의 경우 중간단계 법인을 통한 각 단계 직접소유비율을 곱하는 것만으로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84, 2019.7.3.]

▶ 미국 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family trust 명의로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의 신고의무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미국 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이하 “A투자기구”라 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A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전-2019-법령해석국조-0317, 2019.8.29.]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 보유 계좌 잔액의 최고금액은 각자의 지분을 등에 관계없이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기재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4④)
- 다만,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하여 합산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②)

관련예규

▶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신고의무 판단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공동상속인의 신고의무 이행여부는 해당 계좌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6, 2018.4.26.]

- 아울러,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공동명의자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신고 대상
신고 계좌 유형	해외금융회사에 ① 예·적금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② 증권(해외증권 포함)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③ 파생상품(해외파생상품 포함)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④ 그 밖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신고 대상 자산	현금, 주식(예탁증서 포함),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위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을 신고합니다.
신고 대상 금액	위 신고 대상 자산의 산정금액 합계가 신고대상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 한 경우 그 잔액의 최고금액 ※ 합계액 계산 방법은 21~22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외금융회사는 무엇인가요?

-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 등을 말합니다.
- 국내금융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국외사업장은 포함하나, 외국금융회사가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사업장은 제외합니다.
- * 예를 들어 신한은행 LA지점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나, HSBC 서울지점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관련예규

▶ 북한지역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이 해외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북한지역(개성공업지구 포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른 국외로 보는 것이며, 동 지역에 소재하는 금융기관(국내은행 지점 포함)은 해외금융기관에 해당합니다.

[법규과-724, 2011.6.9.]



신고대상이 되는 계좌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는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 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

- 따라서 예·적금 계좌, 주식·채권·펀드 등 각종 수익증권 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계좌를 비롯하여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보험상품, 그 밖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는 모두 신고대상 계좌입니다.

*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예규

▶ 거주자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국외주식을 보관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거주자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국외주식을 보관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78, 2020.3.26.]



신고의무자 판단 시 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신고대상 연도 중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 * 연도 중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별로 각각의 최고잔액을 모두 합하여 5억 원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억 원 초과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해외금융계좌(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에 보유한 자산별로 아래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자산별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②).

현금	해당하는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상장채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위 이외의 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 기준환율이란 미국 달러화와 우리나라 통화의 교환비율이고, 재정환율은 기준환율을 이용하여 제3국의 환율을 간접적으로 계산한 환율을 말합니다.

 신고의무 발생(5억 원 초과) 여부 판단 사례(2019년 보유분)

(단위 : 억 원)

월 계좌	1/31	2/28	3/31	4/30	5/31	6/30	7/31	8/31	9/30	10/31	11/30	12/31
A계좌 잔액 (예금)	1	3	1	2	2	-	-	1	4	2	1	1
B계좌 잔액 (상장주식)	2	1	1	1	1	-	-	-	-	1	2	1
C계좌 잔액 (보험)	계좌 미개설				1	2	2	1	-	1	-	1
D계좌 잔액 (채권)	1	4	1	1	3	1	계좌 해지					
합계	4	8	3	4	7	3	2	2	4	4	3	3

☞ 위 사례의 경우 보유계좌잔액의 2019년 매월 말일 중 최고 금액은 2/28일 8억 원이며,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대상 계좌는 신고기준일 2월말 보유하고 있는 A계좌, B계좌, D계좌입니다.

관련예규

▶ 파생상품거래(FX마진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의 자산에 대한 매월말일 보유계좌 잔액 산정방법

당해 사안에서 파생상품거래를 위해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의 월말잔액은 통화별 계정잔액을 합산하여 월말잔액을 산정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다만 담보금 목적의 예금과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통화자산은 구분 계산한 후 그 금액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77, 2016.6.27.]



신고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신고의무자는

- 신고대상 연도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 다음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19년 보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기간 : 2020. 6. 1. ~ 6. 30. 까지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여야 하며 별도의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 인터넷으로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시면 세무서 방문 없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신고하는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 계좌관련자가 있는 경우 관련자*에 관한 정보

*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 보유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하였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신고금액으로 신고합니다.

* 기준일 현재 보유계좌의 잔액이 0원이거나 (-)인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신고기준금액 산정시 금융채무 잔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신고서 작성 방법은 38~57페이지 “2.신고서 작성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이 혹시라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까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에 따라 신고하신 해외금융계좌정보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유지됩니다.

※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 국제기본법§81의13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국외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나요?

- (개인의 경우)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국외금융소득(국외이자·배당소득), 국외자산 양도소득 등은 소득세 신고(매년 5월)시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그 국외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세에 상응하는 외국의 조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의 경우)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국외금융소득(국외이자·배당소득), 국외자산 양도소득 등은 법인세 신고(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시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그 국외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에 상응하는 외국의 조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해외금융계좌 신고(매년 6월)시 국외금융소득 등을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한 사실을 발견하였다면 종합소득세·법인세를, 국외자산 양도소득을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 하였다면 양도소득세·법인세를 각각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소득세·법인세 등 관련세금 신고 시 국외소득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추후 과세관청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한 내용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 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을 기재한 해외금융계좌 수정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처음 신고한 해외금융 계좌정보
 2. 수정 신고하는 해외금융 계좌정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기한 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과소신고 또는 미신고한 금액에 대한 과태료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시점에 따라 최대 90%까지 감경됩니다. (27~29페이지 참조)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이러한 혜택이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미(과소)신고 과태료】

-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 과태료율(최고 20%)을 곱한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5①)
- 당해 연도 이전에도 미(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각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④)

미(과소)신고금액	과태료
20억 원 이하	해당 금액 × 10%
2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2억 원 + 20억 원 초과금액 × 15%
50억 원 초과	6.5억 원 + 50억 원 초과금액 × 20%

※ 과태료 납부 및 불복 절차에 대한 내용은 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거짓)소명 과태료】

-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4의3①)
 - 단, 신고의무자가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
- 신고의무자가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미소명 또는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에 과태료율(20%)을 곱한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5②)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명단공개)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나이·직업·주소·위반금액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 ☞ 자세한 내용은 30페이지, [10.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를 감경받는 제도가 있습니까?

- 미(과소)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⑤)
-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 등과 같이 자진신고의 경우 과태료금액을 일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⑥)



① 수정신고 시 감경 금액(과태료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제외)

수정신고 시점	과태료 감경 금액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90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30

② 기한 후 신고 시 감경 금액(과태료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제외)

기한 후 신고 시점	과태료 감경 금액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90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30

※ '20.2.11. 이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명단공개가 되나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미(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나이·직업·주소·위반금액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85의5)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66①4)
 - － 위원회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단,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공개 대상임)
- * 명단 공개는 2013년 신고분(2012년 보유분)부터 적용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도 될 수 있나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미(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16, 조세범 처벌절차법 §15)
 - 형사처벌되는 경우 미(과소)신고 과태료는 부과되지 아니하나, 미(거짓)소명 과태료는 부과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5④)
 - 또한, 내국법인의 대표자,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업무에 관하여 위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에게도 통고처분을 하거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 － 다만,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형사처벌은 2014년 신고분(2013년 보유분)부터 적용됩니다.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나요?

- 2012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성실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한 경우 최고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또는 벌금액이 납부되는 등 부과처분이 확정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해외금융기관명칭, 계좌번호, 계좌잔액, 계좌 명의자 등 해외금융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에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 2015년 이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중요한 자료*와 함께 탈세제보 및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를 함께 신고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20억 원 한도), 탈세제보포상금(40억 원 한도)¹⁾,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20억 원 한도)²⁾의 각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최대 80억 원까지 지급합니다.

1) 탈세제보포상금 :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5천만 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는 등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40억 원 한도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중요한 자료

- 조세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품목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소재에 관한 정보
-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부동산 투기거래, 상속·증여세 탈루관련 정보
- 밀수, 마약 등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조세 탈루 관련 자료
- 그 밖에 조세탈루의 수법, 규모, 정황 등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경우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5천만 원 이상 체납세금을 징수하게 되는 경우 20억 원 한도로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제도

* 은닉재산 : 체납자가 본인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한 부동산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

- 본인의 신원(성명, 주소, 서명·날인 등)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제보하는 경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과태료가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과태료(벌금액)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합니다.
 - 문서, 팩스, 자동응답시스템 또는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제보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 지방국세청을 방문하여 직접 제보하시면 됩니다.

구분	방 법
인터넷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경로 : 탈세제보→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등→ 탈세제보신청하기 →해외금융 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우편제출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우.30128) 8-14, Guksecheong-ro,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Korea 30128 National Tax Service, International Taxation Bureau
팩 스	044-216-6068(해외 : +82-44-216-6068)
자동응답시스템	126 (해외 : +82-126 또는 +82-63-126)
직접방문	가까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신고상담전화	044-244-2903(해외 : +82-44-244-2903)



해외금융계좌 제보시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 해외금융계좌 제보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 해외금융기관명칭, 계좌번호, 계좌잔액, 계좌 명의자 등 해외금융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에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해외금융계좌 제보내용이 혹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까요?

-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제5항 및 동법 제81조의13(비밀유지)규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포상금의 지급금액과 지급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 포상금은 과태료 또는 벌금액의 납부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지급액은 20억 원입니다. 포상금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또는 벌금 납부액	지급액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2015년 이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중요한 자료와 함께 탈세제보 및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를 함께 신고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20억 원 한도)과 탈세제보포상금(40억 원 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20억 원 한도)의 각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최대 80억 원까지 지급합니다.

- 피제보자의 과태료 또는 벌금액이 납부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등 부과처분이 확정(징역형이나 벌금형의 경우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해외에도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와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일본의 국외재산조서제출제도(國外財産調書提出制度)를 비롯하여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FBAR

1) 개요

- 미국 영주권자 · 시민권자,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 법인(파트너십, 신탁 등 포함)이
- 해외에 금융계좌(은행계좌는 물론 파생상품, 뮤추얼펀드를 포함한 증권계좌, 일정한 종류의 연기금계좌 등)를 가지고 있고,
- 1역년(Calendar Year) 동안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재무부에 FinCEN Form 114를 제출하여 그 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2) 소득세 신고 시 보고 의무

- 4월 15일까지 미국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소득세 신고서식(Form 1040)의 Schedule B, Part III에 해외금융계좌 보유사실을 보고하고(Yes에 표시 및 보유국가 기재), 동 계좌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3) 미신고시 제재 내용

- ① 미신고시, 계좌당 \$10,000(고의가 있으면 \$100,000와 최대 잔고의 50% 중 큰 금액)이 Penalty로 매년 부과됩니다.

〈민사상 제재, Civil Penalties〉

- ② 고의로 미신고하여 적발된 경우 \$250,000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고의로 허위신고하여 적발된 경우 \$10,000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대상으로서 병과가 가능합니다.

〈형사상 제재, Criminal Penalties〉

- ③ 미국 납세자는 해외금융계좌(\$10,000 초과 여부에 관계 없음)에서 이자 · 배당소득 · Capital Gain이 발생한 경우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다음해 4월 15일까지 미국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누락 시 누락한 세금과 이자 ·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납세 협력법 : FATCA

1) 개요

- 2010.3월 미국은 자국 납세자의 역외탈세방지 및 금융정보 수집을 위해 해외계좌 납세 협력법을 제정하였습니다.

2) 납세자의 의무

- 해외금융자산 5만 불 이상을 보유한 미국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시 해외금융자산 정보도 같이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대상은 은행계좌, 위탁계좌, 출자 · 채권지분 등을 포괄합니다.
- 신고의무 위반시 1만 불(계속하여 위반시 5만 불)의 벌금과 미신고에 대한 미납세금의 4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해외금융기관(FFI :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의 의무

- 미국 납세자나 납세자가 10% 이상 직·간접 지분을 소유한 외국법인 등의 금융계좌정보를 보유한 해외금융기관(FFI)은 미국 국세청과 계좌정보 제공약정을 체결하여,

- ① 미국 납세자의 계좌 보유에 대한 신원파악·고객확인 의무를 수행하고,
- ② 미국인 및 미국인이 지분을 가진 실체의 계좌(US account) 정보를 매년 보고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

●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전년도말 기준으로 보고한 금융계좌 정보를 양국 국세청이 매년 9월 정기적으로 상호교환

■ 보고대상 계좌(미국 → 한국)

(개인) 연간이자 10달러 초과 예금계좌, 미국 원천소득(이자, 배당, 기타)과 관련된 기타금융계좌

(법인)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금융계좌

■ 정보교환 시기 : 전년도말 금융정보를 매년 9월까지 상호교환(2016년부터 시행)

㉔ 일본의 국외재산조서 제출제도(國外財産調書提出制度)

1) 일본은 국외재산 관련 소득이나 상속재산의 신고누락이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내국세의 적정한 과세 및 징수를 위해 일정액을 초과하는 국외재산을 보유하는 개인에 대해 그 보유 국외재산에 관한 조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를 2012년 도입하여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매년 12월 31일 현재 재산가액 합계액이 5 천만 엔을 초과하는 국외재산을 보유한 거주자는 당해 국외재산의 종류, 수량 및 가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국외재산조서를 다음해 3월 15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고서 작성사례

- 1.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신고서 작성사례 38
- 2. 차명 계좌의 경우 신고서 작성사례 44
- 3. 홈택스 전자신고 요령 50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해외금융계좌 명세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국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공동명의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 대한 다음 사례를 통해 서식 및 작성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공동명의나 차명계좌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래 사례의 공동명의 부분을 제외한 경우를 참고하시어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와 해외금융계좌 명세서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신고서 작성 자료

1) 거주자 김국세는 배우자 이성실과의 공동명의 계좌 A, B 및 본인 단독명의의 계좌 C를 신고하고자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김국세	700101-*****	TM*****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	010-*****
이성실	720628-*****	YC*****		010-*****

2) 해외금융계좌 A, B, C의 계좌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	명의자	계좌번호	계좌종류	개설일
	금융회사명	금융회사소재지	표시통화	해지일
A	Kim Gukse, Lee Sungsil	*****	보험	2019.10.26
	Mitsubishi Insurance	7-1 Marunouch 2-Chome, Chiyoda-Gu, Tokyo, Japan	엔화 (JPY)	-
B	Kim Gukse, Lee Sungsil	*****	예금	2011. 1.10
	Bank of America	555 California St, San Francisco, CA, USA	달러 (USD)	2019.12.31
C	Kim Gukse	*****	적금	2017. 1.10
	Commonwealth Bank	691 George St, Sydney, NSW, Australia	호주달러 (AUD)	-

3) 해외금융계좌 A, B, C의 2019년 계좌별 잔액명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	구분	1월31일	3월31일	5월31일	10월31일	12월31일
A	납입금액(천¥)				5,000	5,000
	환율(W/¥)	미	개	설	15	15
	환산(천원)				75,000	75,000
B	잔액(\$)	500,000	300,000	200,000	5,000	
	환율(W/\$)	1,122	1,126	1,075	1,128	해지
	환산(천원)	561,000	337,800	215,000	5,640	
C	잔액(AUD)	200,000	250,000	300,000	400,000	300,000
	환율(W/AUD)	1,116	1,133	1,139	1,177	1,169
	환산(천원)	223,200	283,250	341,700	470,800	350,700
합계(천원)		784,200	621,050	556,700	551,440	425,700

* 연중 표 이외의 날은 계좌잔액이 0이라고 가정, 환율은 위와 같다고 가정.

2. 신고서 작성요령

- 1) 거주자 김국세는 본인명의 적금계좌 C 뿐 아니라, 배우자와의 공동 명의의 보험계좌 A 및 예금계좌 B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배우자 이성실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계좌 A, B 외에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가 있고,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잔액의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2) 김국세는 해외금융계좌 A, B, C에 보유한 자산 평가액의 매 월말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달이 1월, 3월, 5월 및 10월이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입니다.
(유의할 점은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김국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계좌 잔액 전체금액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3) 1월31일 보유계좌잔액 784,200,000원이 매월 말일 중 최고금액이므로, 1월31일이 신고기준일이 되고 신고기준일의 계좌잔액 합계액인 784,200,000원과 그 때의 보유계좌인 B계좌(잔액 561,000,000원)와 C계좌(잔액 223,200,000원)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신고대상 연도 2019 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신고 구분	☒ 정기 ☐ 수정 ☐ 기한 후	신고인 유형	☒ 거 주 자 ☐ 내국법인
-------------------	-------------------	----------	--	-----------	--

1. 신고인 인적사항

① 성명 (법인명)	(한글) 김국세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700101-*****
	(영문) KIM GUKSE	③ 여권번호	TM*****
④ 주소 (소재지)	서울시 중로구 중로5길 **	⑤ 전화번호	010-****-****

2. 해외금융계좌 보유 현황

⑥ 총 신고계좌 수	보유계좌 잔액의 연중 매월 말일의 최고금액	
	⑦ 기준일	⑧ 금액
2 개	2019 , 1 , 31 ,	784,200,000 원

3. 해외금융계좌별 상세

(단위: 현지 통화, 원)

보유 계좌 일련 번호 (1)	⑨ 계좌 관련자 정보		[] 없음, [x] 공동명의계좌, [] 외국법인(100% 소유), []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⑩ 금융회사명	Bank of America		⑪ 계좌종류	예금
	⑫ 계좌번호	*****		⑬ 표시 통화	USD
	⑭ 계좌 명의자	KIM GUKSE, LEE SWINGSIL		⑮ 현지기업 고유번호	
	⑯ 기준일 잔액	(외화)	500,000	⑰ 개설일	2011 , 1 , 10 ,
		(원화)	561,000,000	⑱ 해지일	2019 , 12 , 31 ,
	⑲ 금융회사 소재지	국가	지역[주(州), 성(省) 등]	도시	그 밖의 상세 주소
		USA	California	San Francisco	5** California St,

위 신고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7조에 따라 위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20 년 6 월 28 일

신 고 인

김 국 세 (서명 또는 인)

종 로 세무서장 귀하

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	------

210mm×297mm [택상지(80g/㎡) 또는 중필지(80g/㎡)]

(제2쪽)

작성방법

- ※ 신고대상 연도(20××년)를 적고 “신고 구분”, “신고인 유형”란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처음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정보(수정신고를 2회 이상하는 경우에는 이전 수정신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위쪽에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고, 수정하려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아래쪽에 검은색 글씨로 작성합니다.
- ① ~ ⑤: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신고인이 거주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를 적습니다. 신고인이 법인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 ①・③: 거주자는 여권 등에 적혀 있는 영문 성명(full name)과 여권번호 등을 “① 성명(영문)”란과 “③ 여권번호”란에 적습니다.
 - ⑥: 신고계좌의 총 개수를 적고 해당 계좌별 정보를 “3. 해외금융계좌별 명세”에 작성합니다. 신고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보유계좌 일련번호 2번 이하부터는 이 서식 3쪽의 해외금융계좌 명세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⑦・⑧: “⑦ 기준일”란에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의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했을 때 가장 큰 금액이 되는 날을 적고, 그 금액을 ‘원 단위’로 “⑧ 금액”란에 적습니다. 이 경우 합산하는 금액은 해당 계좌에 반영된 금액이며 기간 이자 등이 실제 해당 계좌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를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 ⑨: 해당 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인 경우에 해당란에 “√” 표시를 하고 이 서식 4쪽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공동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두 곳에 모두 “√” 표시를 하고 이 서식 4쪽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에 해당 관련자를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⑩: 영문(full name)으로 작성하며, 영문이 없는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합니다.
 - ⑪: 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집합투자증권(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합니다), 보험 등 계좌에 의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 ⑫: 하이픈(-) 표시 없이 연속으로 숫자나 기호를 적습니다.
 - ⑬: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z.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 (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 ⑭: 계좌주 명의를 영문으로 작성하며, 영문이 없는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합니다. 법인의 지점이나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지점 및 연락사무소의 명칭을 포함합니다.
 - ⑮: 세무서장이 해외현지기업(해외지점, 연락사무소 등)에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 ⑯: ⑦란의 기준일 현재의 해당 계좌의 외화표시 잔액(외화표시 잔액이 둘 이상의 통화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주된 단일 통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과 이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각각 (외화), (원화)란에 적습니다. ⑨란의 계좌 관련자가 있는 경우 공동명의자 또는 명의자・실소유자는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해당 계좌의 전체 금액을 적습니다.
 - ⑰: 해당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의 소재지를 국가, 지역[주(州), 성(省) 등], 도시, 그 밖의 상세 주소로 나누어 영문으로 작성하며, 영문으로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합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3쪽)

신고대상 연도 2019 년		해 외 금 융 계 좌 명 세 서		신고인 유형	[√] 거 주 자 [] 내국법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700101-*****
(단위: 현지 통화, 원)					
보유 계좌 일련 번호	⑨ 계좌 관련자 정보		[√] 없음, [] 공동명의계좌, [] 외국법인(100% 소유), []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⑩ 금융회사명	Commonwealth Bank		⑪ 계좌 종류	적금
	⑫ 계좌번호	*****		⑬ 표시 통화	AMD
	⑭ 계좌 명의자	KIM GUKSE		⑮ 현지기업 고유번호	
	⑯ 기준일 잔액	200,000 (외화) 223,200,000 (원화)		⑰ 개설일	2017, 1, 10
(2)	⑰ 금융회사 소재지	국가	지역[주(州), 성(省) 등]	도시	그 밖의 상세 주소
		AMSTRALIA	New South Wales	Sydney	6** George St.
보유 계좌 일련 번호	⑨ 계좌 관련자 정보		[] 없음, [] 공동명의계좌, [] 외국법인(100% 소유), []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⑩ 금융회사명			⑪ 계좌종류	
	⑫ 계좌번호			⑬ 표시 통화	
	⑭ 계좌 명의자			⑮ 현지기업 고유번호	
	⑯ 기준일 잔액	(외화) (원화)		⑰ 개설일	. . .
()	⑰ 금융회사 소재지	국가	지역[주(州), 성(省) 등]	도시	그 밖의 상세 주소
보유 계좌 일련 번호	⑨ 계좌 관련자 정보		[] 없음, [] 공동명의계좌, [] 외국법인(100% 소유), []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⑩ 금융회사명			⑪ 계좌 종류	
	⑫ 계좌번호			⑬ 표시 통화	
	⑭ 계좌 명의자			⑮ 현지기업 고유번호	
	⑯ 기준일 잔액	(외화) (원화)		⑰ 개설일	. . .
()	⑰ 금융회사 소재지	국가	지역[주(州), 성(省) 등]	도시	그 밖의 상세 주소
보유 계좌 일련 번호	⑨ 계좌 관련자 정보		[] 없음, [] 공동명의계좌, [] 외국법인(100% 소유), []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⑩ 금융회사명			⑪ 계좌 종류	
	⑫ 계좌번호			⑬ 표시 통화	
	⑭ 계좌 명의자			⑮ 현지기업 고유번호	
	⑯ 기준일 잔액	(외화) (원화)		⑰ 개설일	. . .
()	⑰ 금융회사 소재지	국가	지역[주(州), 성(省) 등]	도시	그 밖의 상세 주소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신고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만 보유계좌 일련번호 2번부터 차례로 작성합니다. (/)쪽
2. 각 일련번호의 계좌마다 ⑩번 항목부터 ⑯번 항목까지 해당 사항을 각각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4쪽)

신고대상 연도 2019 년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		신고인 유형	[√] 거 주 자 [] 내국법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700101-*****
관련자 일련번호 (1)	보유계좌 일련번호	1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 유형2 [] 유형3, [] 유형4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소 (소재지)	이성철 서울시 중로구 중로5길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720628-***** 전화번호 010-***-****
관련자 일련번호 ()	보유계좌 일련번호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 유형2 [] 유형3, [] 유형4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관련자 일련번호 ()	보유계좌 일련번호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 유형2 [] 유형3, [] 유형4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관련자 일련번호 ()	보유계좌 일련번호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 유형2 [] 유형3, [] 유형4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관련자 일련번호 ()	보유계좌 일련번호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 유형2 [] 유형3, [] 유형4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관련자 일련번호 ()	보유계좌 일련번호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 유형2 [] 유형3, [] 유형4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신고계좌 중 관련자가 있는 경우(신고서 1쪽과 3쪽의 ③번 항목에만 작성합니다. (/)쪽
- 관련자가 있는 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관련자 일련번호의 2번 이하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같은 계좌의 관련자가 둘 이상인 경우(8명의 공동명의자 중 1명이 다른 2명의 공동명의자를 신고하는 경우, 공동명의자와 실소유자가 함께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관련자를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보유계좌 일련번호는 신고서 1쪽 또는 3쪽에 적힌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계좌 관련자 유형은 공동명의자인 경우 '유형1'을,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외국인 지주 100%를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유형2'를, 신고인이 계좌 명의자이고 실소유자 정보를 적는 경우 '유형3'을, 신고인이 실소유자이고 계좌 명의자 정보를 적는 경우 '유형4'를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210mm×297mm [택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다음은 해외금융계좌를 차명계좌로 보유한 경우에 대하여 신고서 작성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공동명이나 차명계좌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래 사례의 차명계좌 부분을 제외한 경우를 참고하시어 해외금융계좌신고서와 해외금융계좌명세서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신고서 작성 자료

- 1) 거주자 김국세가 본인 명의로 해외예금계좌 A를 보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James Lee 명의로 증권계좌 B(차명계좌)를 보유한 경우입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김국세	700101-*****	TM*****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	010-*****
James Lee	-	-	118 North Clark St, Chicago, Illinois, USA	*-***-***-***

- 2) 해외금융계좌 A, B의 계좌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	명의자	계좌번호	계좌종류	개설일
	금융회사명	금융회사소재지	표시통화	해지일
A	Kim Gukse	*****	예금	2014.5.3
	BANK OF CHINA	200 Mid Yincheng Rd, Pudong, Shanghai, China	위안화 (CNY)	-
B	James Lee	*****	펀드	2015.1.10
	Morgan Stanley	70 W Madison St, Chicago, Illinois, USA	달러 (USD)	-

3) 해외금융계좌 A, B의 2019년 계좌별 잔액명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	구 분		3월31일	5월31일	7월31일	9월30일	11월30일
A 계좌	잔액(천元)		1,000	1,100	1,200	500	500
	환율(W/元)		170	168	164	172	176
	환산(천원)		170,000	184,800	196,800	86,000	88,000
B 계좌	펀드 (a)	보유량				100좌	100좌
		기준가격(\$)	미	보	유	900	1,100
		보유액(\$)				90,000	110,000
	펀드 (b)	보유량	500좌	500좌	450좌	400좌	400좌
		기준가격(\$)	600	650	750	770	700
		보유액(\$)	300,000	325,000	337,500	308,000	280,000
	환율(W/\$)		1,114	1,093	1,060	1,100	1,115
	환산(천원)		334,200	355,225	357,750	437,800	434,850
	합계(천원)		504,200	540,025	554,550	523,800	522,850

* 연중 표 이외의 날은 계좌잔액이 0이라고 가정, 환율은 위와 같다고 가정.

2. 신고서 작성요령

- 1) 거주자 김국세는 본인명의 계좌 A 뿐 아니라, James Lee 명의의 집합투자증권(펀드) 계좌 B도 실소유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2) 평가대상 자산은 예금과 집합투자증권(펀드)이며, 집합투자증권은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수량에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후 집합투자증권과 예금잔액을 합산합니다.
- 3) 김국세는 해외금융계좌 A, B에 보유한 현금과 집합투자증권(펀드) 평가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4) 보유계좌잔액의 합이 연중 최고가 되는 날은 7월31일(기준일)으로 신고기준일 잔액은 554,550,000원입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제1쪽)

신고대상 연도 2019 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신고 구분	☒ 정기 ☐ 수정 ☐ 기한 후	신고인 유형	☒ 거주자 ☐ 내국법인
-------------------	-------------------	----------	--	-----------	--

1. 신고인 인적사항

① 성명 (법인명)	(한국) 김국세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700101-*****
	(영문) KIM GUKSE	③ 여권번호	TM*****
④ 주소 (소재지)	서울시 중로구 중로5길 **	⑤ 전화번호	010-****-****

2. 해외금융계좌 보유 현황

⑥ 총 신고계좌 수	보유계좌 잔액의 연중 매월 말일의 최고금액	
	⑦ 기준일	⑧ 금액
2 개	2019 , 7 , 31 ,	554,550,000 원

3. 해외금융계좌별 명세

(단위: 현지 통화, 원)

보유 계좌 일련 번호 (1)	⑨ 계좌 관련자 정보	[√] 없음, [] 공동명의계좌, [] 외국법인(100% 소유), []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⑩ 금융회사명	Bank of China		⑪ 계좌종류	예금
	⑫ 계좌번호	*****		⑬ 표시 통화	CNY
	⑭ 계좌 명의자	KIM GUKSE		⑮ 현지기업 고유번호	
	⑯ 기준일 잔액	(외화) 164,000		⑰ 개설일	2014 , 5 , 3 ,
		(원화) 196,800,000		⑱ 해지일	, , ,
	⑲ 금융회사 소재지	국가	지역[주(州), 성(省) 등]	도시	그 밖의 상세 주소
		CHINA		Shanghai	200 Mid Yincheng RD, Pudong

위 신고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7조에 따라 위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20 년 6 월 28 일

신 고 인

김 국 세 (서명 또는 인)

종 로 세무서장 귀하

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작성방법

- ※ 신고대상 연도(20××년)를 적고 “신고 구분”, “신고인 유형”란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처음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정보(수정신고를 2회 이상하는 경우에는 이전 수정신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위쪽에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고, 수정하려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아래쪽에 검은색 글씨로 작성합니다.
1. ① ~ ⑤: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신고인이 거주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를 적습니다. 신고인이 법인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2. ①・③: 거주자는 여권 등에 적혀 있는 영문 성명(full name)과 여권번호 등을 “① 성명(영문)”란과 “③ 여권번호”란에 적습니다.
 3. ⑥: 신고계좌의 총 개수를 적고 해당 계좌별 정보를 “3. 해외금융계좌별 명세”에 작성합니다. 신고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보유계좌 일련번호 2번 이하부터는 이 서식 3쪽의 해외금융계좌 명세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4. ⑦・⑧: “⑦ 기준일”란에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의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했을 때 가장 큰 금액이 되는 날을 적고, 그 금액을 ‘원 단위’로 “⑧ 금액”란에 적습니다. 이 경우 합산하는 금액은 해당 계좌에 반영된 금액이며 기간 이자 등이 실제 해당 계좌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를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5. ⑨: 해당 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인 경우에 해당란에 “√” 표시를 하고 이 서식 4쪽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공동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두 곳에 모두 “√” 표시를 하고 이 서식 4쪽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에 해당 관련자를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6. ⑩: 영문(full name)으로 작성하며, 영문이 없는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합니다.
 7. ⑪: 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집합투자증권(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합니다), 보험 등 계좌에 의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8. ⑫: 하이픈(-) 표시 없이 연속으로 숫자나 기호를 적습니다.
 9. ⑬: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나 외국환은행의 환율 조회 사이트를 참고하여 영문 3문자 (예시: 미국 USD)로 작성합니다.
 10. ⑭: 계좌주 명의를 영문으로 작성하며, 영문이 없는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합니다. 법인의 지점이나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지점 및 연락사무소의 명칭을 포함합니다.
 11. ⑮: 세무서장이 해외현지기업(해외지점, 연락사무소 등)에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12. ⑯: ⑦란의 기준일 현재의 해당 계좌의 외화표시 잔액(외화표시 잔액이 둘 이상의 통화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주된 단일 통화로 환산하여 적습니다)과 이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각각 (외화), (원화)란에 적습니다. ⑨란의 계좌 관련자가 있는 경우 공동명의자 또는 명의자・실소유자는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닌 해당 계좌의 전체 금액을 적습니다.
 13. ⑰: 해당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의 소재지를 국가, 지역[주(州), 성(省) 등], 도시, 그 밖의 상세 주소로 나누어 영문으로 작성하며, 영문으로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3쪽)

신고대상 연도 2019 년	해 외 금 융 계 좌 명 세 서				신고인 유형	[√] 거 주 자 [] 내국법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700101-*****	
(단위: 현지 통화, 원)						
보유 계좌 일련 번호	③ 계좌 관련자 정보		[] 없음, [] 공동명의계좌, [] 외국법인(100% 소유), [√]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⑩ 금융회사명	Morgan Stanley			⑪ 계좌 종류	주식
	⑫ 계좌번호	*****			⑬ 표시 통화	USD
	⑭ 계좌 명의자	JAMES LEE			⑮ 현지기업 고유번호	
	⑯ 기준일 잔액	(외 화)	337,500	⑰ 개설일	2015, 1, 10	
(2)	⑯ 기준일 잔액		(원 화)	357,750,000	⑱ 해지일	
	⑲ 금융회사	국가	지역[주(州), 성(省) 등]	도시	그 밖의 상세 주소	
	소재지	USA	ILLINDIS	Chicago	7* W Madison St.	
	③ 계좌 관련자 정보		[] 없음, [] 공동명의계좌, [] 외국법인(100% 소유), []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⑩ 금융회사명				⑪ 계좌종류	
계좌 일련 번호	⑫ 계좌번호				⑬ 표시 통화	
	⑭ 계좌 명의자				⑮ 현지기업 고유번호	
	⑯ 기준일 잔액	(외 화)		⑰ 개설일		
	⑯ 기준일 잔액	(원 화)		⑱ 해지일		
	⑲ 금융회사	국가	지역[주(州), 성(省) 등]	도시	그 밖의 상세 주소	
()	소재지					
	③ 계좌 관련자 정보		[] 없음, [] 공동명의계좌, [] 외국법인(100% 소유), []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⑩ 금융회사명				⑪ 계좌 종류	
	⑫ 계좌번호				⑬ 표시 통화	
	⑭ 계좌 명의자				⑮ 현지기업 고유번호	
계좌 일련 번호	⑯ 기준일 잔액	(외 화)		⑰ 개설일		
	⑯ 기준일 잔액	(원 화)		⑱ 해지일		
	⑲ 금융회사	국가	지역[주(州), 성(省) 등]	도시	그 밖의 상세 주소	
	소재지					
	③ 계좌 관련자 정보		[] 없음, [] 공동명의계좌, [] 외국법인(100% 소유), []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보유 계좌 일련 번호	⑩ 금융회사명				⑪ 계좌 종류	
	⑫ 계좌번호				⑬ 표시 통화	
	⑭ 계좌 명의자				⑮ 현지기업 고유번호	
	⑯ 기준일 잔액	(외 화)		⑰ 개설일		
	⑯ 기준일 잔액	(원 화)		⑱ 해지일		
()	⑲ 금융회사	국가	지역[주(州), 성(省) 등]	도시	그 밖의 상세 주소	
	소재지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신고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만 보유계좌 일련번호 2번부터 차례로 작성합니다. (/)쪽
- 각 일련번호의 계좌마다 ⑮번 항목부터 ⑲번 항목까지 해당 사항을 각각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4쪽)

신고대상 연도 2019 년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		신고인 유형	[√] 거 주 자 [] 내국법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700101-*****
관련자 일련번호 (1)	보유계좌 일련번호	2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 유형2, [] 유형3, [√] 유형4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JAMES LEE 주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관련자 일련번호 ()	보유계좌 일련번호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 유형2, [] 유형3, [] 유형4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관련자 일련번호 ()	보유계좌 일련번호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 유형2, [] 유형3, [] 유형4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관련자 일련번호 ()	보유계좌 일련번호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 유형2, [] 유형3, [] 유형4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관련자 일련번호 ()	보유계좌 일련번호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 유형2, [] 유형3, [] 유형4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관련자 일련번호 ()	보유계좌 일련번호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 유형2, [] 유형3, [] 유형4	
	관련자 정보	성명 (법인명) 주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신고제자 중 관련자가 있는 경우(신고서 1쪽과 3쪽의 ③번 항목에만 작성합니다. (/)쪽

2. 관련자가 있는 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관련자 일련번호의 2번 이하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같은 계좌의 관련자가 둘 이상인 경우(3명의 공동명의자 중 1명이 다른 2명의 공동명의자를 신고하는 경우, 공동명의자와 실소유자가 함께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관련자를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3. 보유계좌 일련번호는 신고서 1쪽 또는 3쪽에 적힌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4. 계좌 관련자 유형은 공동명의자인 경우 '유형1'을,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외법인 있는 주식 100%를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유형2'를, 신고인이 계좌 명의자이고 실소유자 정보를 적는 경우 '유형3'을, 신고인이 실소유자이고 계좌 명의자 정보를 적는 경우 '유형4'를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①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화면으로 이동하여 [일반신고]란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선택하고 [공인인증서] 또는 [일반 사용자 아이디]로 로그인 합니다.

신고/납부

홈택스에서 세금의 신고 및 납부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서면 신고 및 세무서 방문의 불편을 인터넷으로 대신하여 더욱 쉽고 빠른 업무처리를 제공합니다.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지방소득세 납부
- 인지세 전자문서 납부

세금신고 삭제요청

신고부속서류제출

신고/납부 이용시간

신고 이용시간	납부 이용시간
각 세금에 대한 법정신고 기간 중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이용시간과 동일
매일 06:00 ~ 24:00	365일 07:00 ~ 23:30

신고 이용방법 및 절차

- 01 세금신고 대상선택
- 02 세금신고 진행
- 03 세금신고 접수확인

- 신고서 작성 방식 이용
세무회계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제출
- 신고서 변환 방식 이용
세무회계프로그램 등에서 신고서 작성 후 전자신고파일생성 →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오류검증(형식 · 내용검증) 후 제출
- 접수증 확인 · 출력
제출 즉시 접수증 확인 또는 Step2[신고내역]에서 접수증 확인 · 출력

세금 납부 이용절차

- 01 세금납부 대상선택
- 02 세금납부 진행
- 03 세금납부 확인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원천세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인지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증권거래세
- 주세
- 과거신고내역('15.2.22 이전)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
- 공익법인 보고서제출
- 농어업영수증발급신청
-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 조차부도 사내 거래내역제출

QUICK

- 현금영수증
- 전자세금계산서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장려금
- 지역장려금
- 로그아웃
- 접기

②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신고/납부
일반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Step 1. 일반신고
Step 2. 제출내역

- [STEP 01. 세금신고] 신고안내 및 신고서 작성(변환) 제출 단계입니다.
- 해당 신고기한 내 여러 번 신고를 하는 경우 최종 세금 신고된 내용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신고 후 접수증의 접수결과(정상)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증 및 신고요약정보는 [STEP 02. 신고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서 신고

도움말

일반신고

해외금융
계좌신고서
작성하기
해외금융
계좌신고서
파일변환신고

- 해외금융계좌신고서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개설,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함)이 신고대상연도 매 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정보를 다음연도 6월에 작성 및 제출합니다.
- 신고서를 여러 번 전산제출할 경우에는 최종 전송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합니다.
- 접수증 및 신고요약 정보는 [Step 2. 제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UICK

- 현금영수증
- 전자세금계산서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장려금
- 지녀장려금
- 로그아웃
- 접기

- ③ [기본사항] 화면에서 신고대상연도, 신고인 유형을 선택합니다.
- ④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조회된 주소를 수정해 주세요.
- ⑤ 해외금융계좌 보유현황에서 신고대상연도 중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현황을 입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당/제보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Step 1. 일반신고

Step 2. 제출내역

01.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
 02. 해외금융계좌 명세
 03. 해외금융계좌별 관련자 명세
 04. 신고자료 제출

제출여부 >>>> 작성중입니다.
미리보기

● **기본정보 입력**

- 이 서식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 작성합니다.
- 기 작성한 신고서는 해외금융계좌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신고서 불러오기]로 불러옵니다.
- 총 신고계좌수란에는 신고하고자 하는 계좌의 총수를 적습니다.
- [기준일]란에는 신고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하였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매월 말일만 입력 가능)
- [금액]란에는 위 기준일 현재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원화 환산)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모두 입력 후에는 '다음' 버튼을 클릭한 후 해외금융계좌별 명세를 입력합니다.

● **신고 구분**

* 신고대상연도

2016

년
* 신고인 유형

☒ 거주자
 ☐ 내국법인

신고서 불러오기

● **신고인 인적사항**

* 주민등록번호	800101-*****	확인	
* 성명(한글)	성명바꾸지마세요	* 성명(영문)	
전화번호	044 - 2233 - 2211	* 여권번호	
기본주소 주소검색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09동 903호(무악동, 무악현대아산사동)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무악현대아산사동 109동 903호		
상세주소	건물명(아파트, 상가) 동 층 호		
영문주소			

● **해외금융계좌 보유현황**

* 총 신고계좌수	* 기준일	*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 금액
개		원

저장 후 다음이동

≡ QUICK

현금영수증
1000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영수증

근로장려금
지녀장려금

로그아웃

점가

52 | 2020 알기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⑥ 다음 화면(해외금융계좌 명세)에는 신고대상연도 중 기준일 현재 보유한 각 계좌별로 상세정보를 입력합니다.

신고/납부

일반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Step 1. 일반신고

Step 2. 제출내역

01.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02. 해외금융계좌 명세

03. 해외금융계좌별 관련자 명세

04. 신고자료 제출

제출여부 >>> 작성중입니다.

미리보기

해외금융계좌 명세

· 해외금융계좌별 명세 작성입니다.

· 현지기업 고유번호 : 세무서장이 해외현지기업(해외지점, 연락사무소 등)에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신고 구분 (단위: 현지통화, 원) 초기화

계좌 관련자 정보

없음

공동명의계좌

외국법인(100% 소유)

영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금융회사명

계좌종류

계좌번호

표시통화

계좌명의자

현지기업 고유번호

기준일 잔액

국가

지역(주, 성 등)

도시

기타 상세주소

*(외화)

*(원화)

개설일

해지일

금융회사 소재지

코드검색

코드검색

코드검색

등록하기

소속자 인적사항

선택내용 삭제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명의자

검색

선택	입력번호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통화	계좌명의자	기준일잔액
						(외화)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1

총0건(1/1)

집계현황

해외금융계좌 총 건수

해외금융계좌 기준일 잔액 합계(원화)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QUICK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장려금지내령금

로그아웃

접기

2 신고서 작성사례

2. 신고서 작성사례 | 53

- ⑦ 금융회사 입력을 위해 **코드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국가 선택창이 뜹니다.
금융회사가 소재한 국가를 선택하세요.
- ⑧ 국가코드는 아래와 같이 조회하면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홍콩(HK)이나 마카오(MO)는 별도 국가코드가 있으므로 중국(CN)을 선택하지
마세요)

국가코드 목록조회

국가명 국가코드

조회하기

총 290건의 조회 결과가 있습니다.

국가명	국가코드	
가나	GH	선택
가봉	GA	선택
가이아나	GY	선택
감비아	GM	선택
건지	GG	선택
과달루페	GP	선택
과테말라	GT	선택

닫기

- ⑨ 다음으로 선택한 국가의 금융회사코드를 선택합니다.
- ⑩ 표시통화코드를 모를 경우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화면이 나타납니다.
- ⑪ 1개 계좌의 상세정보를 모두 입력하였으면 **등록하기** 를 클릭합니다. 또 다른
계좌정보를 입력하려면 ⑦번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하세요.

- ⑫ 입력한 계좌 중 공동명의계좌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계좌가 있는 경우 그 계좌의 관련자를 다음 화면에서 입력합니다.

신고/납부

일반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Step 1. 일반신고

Step 2. 제출내역

01.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02. 해외금융계좌 명세

03. 해외금융계좌별 관련자 명세

04. 신고자료 제출

제출여부 >>> 작성중입니다.

미러보기

해외금융계좌별 관련자 명세

신고계좌의 관련자 명세 입력 화면입니다.

동일 계좌에 관련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입력

"보유계좌 일련번호" 항목은 [코드조회] 버튼 클릭 후, 선택

"계좌 관련자 유형" 항목

유형1 : 공동명의자 *유형2 : 외국법인(100% 소유)

유형3 : 신고자가 계좌 명의자이고 실소유자의 정보를 입력 *유형4 : 신고자가 실소유자이고 계좌 명의자의 정보를 입력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

초기화

* 보유계좌 일련번호

관련자있는 계좌조회

* 계좌 관련자 유형

☐ 유형1. 공동명의여부
☐ 유형2. 외국법인(100% 소유)
☐ 유형3. 신고자가명의자여부
☐ 유형4. 신고자가실소유자여부

주면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성명(성호)

전화번호

-

-

주소(소재지)

등록하기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 목록

성명(법인명)

검색

선택내용 삭제

선택	보유계좌 일련번호	계좌관련인 일련번호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주면(사업자)등록번호	성명(법인명)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1

총0건(1/1)

이전

신고서 작성완료

⑬ 보유계좌연번을 찾으려면 **관련자있는 계좌조회**를 클릭하여 해당 계좌를 선택합니다.

⑭ 관련자 정보입력 후 **등록하기**를 클릭하고 다른 관련자를 추가 입력 시에는 ⑬번부터 다시 입력합니다.

2. 신고서 작성사례 | 55

⑮ 관련자 정보입력을 마친 후 **신고서 작성완료** 를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고/납부

일반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HomeTax

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인원증명

신청/재출

신고/납부

상담/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Step 1. 일반신고

Step 2. 제출내역

01.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02. 해외금융계좌 명세

03. 해외금융계좌별 관련자 명세

04. 신고자료 제출

성명바꾸지마세요 님 | 성명바꾸지마세요800101*****

제출여부 >>>> 작성중입니다.

미리보기

신고서 제출

제출 후에는 STEP 2.제출내역 탭을 눌러 접수증을 인쇄/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 요약

제출자 납세자번호	800101-*****	성명(상호)	성명바꾸지마세요
과세시작년월	2016-01	제출년월	2017-05

제출서식

번호	서식명
1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2	해외금융계좌 명세서
3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

제출내역이 맞으면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전

제출하기

QUICK

원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연말경산간소화

근로장려금지급장려금

로그아웃

⑯ **미리보기** 를 클릭하여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 후 오류가 없으면 제출내역을 확인 후 **제출하기** 를 클릭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⑰ 제출 후에는 STEP 2.제출내역 탭을 눌러 접수증을 인쇄/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 접수증



사용자 ID	xnts_user111	사용자명	성명바꾸지마세요	접수일시	2017-05-18 13:57:42
접수결과	정상	접수번호	101-2017-2-600000070942		

· 제출내용

납세자명	성명바꾸지마세요	납세자번호	800101-*****
과세년월	2016-01	신고구분	정기신고
신고서종류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첨부한서류	2건

위와 같이 접수 되었습니다.

※ 세무서 전자신고 창구에서 도움을 받아 신고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은 납세자인 귀하에게 있으며 최종신고서 작성내용을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신고기간내에 다시 신고(신고내용의 변경 유무에 상관 없음)하는 경우에는 최종 신고한 내용만 정당한 신고된 것으로 보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인쇄하기



2020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3. 자주 묻는 질문(FAQ)

1. 신고의무자 - 개인	60
2. 신고의무자 - 법인 등	62
3.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63
4. 주식 등 금융계좌	66
5. 신고대상 판정 기준 및 평가	68
6. 환율 적용 및 신고 방법	70
7. 과태료	72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나 해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 A**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해외장기체류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 A** 해외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세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예컨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 되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국내집합투자기구(펀드)가 펀드 명의로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하고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펀드 가입자도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신고의무가 있는지요?

- A**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인 경우에는 계약형·회사형 등 펀드의 유형에 관계없이 펀드에 투자한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⑤ 단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A 외국인이 비거주자라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한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합니다.



미국 영주권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A 미국 영주권자도 거주자라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도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나요?

A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입니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은 내국법인의 일부이므로 해외지점의 계좌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같은 비영리법인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A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은 신고의무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2019년 11월에 폐업한 경우 2020년 6월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A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인 경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법인도 청산종결등기 전까지는 법인격이 있으므로 신고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지요?

A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소득세 신고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외국은행 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019년 6월까지 이미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2020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A 2019년까지 이미 신고한 계좌라도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계좌잔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2020년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대상인지요?

A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이 가장 큰 날에 보유하고 있는 계좌라면 신고대상입니다.



계좌개설만 하고 잔고가 없는 계좌나 당좌 잔고가(-)인 계좌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A 신고기준일인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없거나 잔고가 (-) 인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단, 대출계좌의 잔액이 0원을 초과한 기간 동안에는 평가 및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금융자산과 해외 금융부채가 있을 경우 부채를 차감하여 신고하는지 아니면 부채는 무시하고 금융자산만 잔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는지요?

A 부채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해외 금융자산만 신고대상입니다.

※ 계좌잔액이 (-)인 경우 다른 계좌의 잔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현금이나 주식이 아닌 다른 금융자산을 5억 원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요?

A 2013년 보유분을 신고하는 2014년부터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등 현금이나 주식이 아닌 다른 금융자산을 5억 원을 초과하여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경우에도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저축성 보험과는 달리 만기시에 지급보험료가 없고 사고·위험 보장 목적의 소멸성 보험계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소재 은행의 A예금계좌(이자는 없음)에 5월 1일 20억 원을 예치하였다가 5월 2일 해지하고 전액 인출하여 같은 날 같은 은행의 B증권계좌에 일본국채(8월31일 평가액 30억 원이 매월 말일중 최고액)를 보유하게 된 경우 신고대상 계좌는 어떤 것인가요?(다른 해외금융계좌는 없는 것으로 가정)

A 신고대상 계좌는 일본국채 30억 원을 예치한 B증권계좌이며, 신고기준일은 8월 31일입니다.

※ 5월 2일 해지한 예금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동거가족의 해외금융계좌잔액 합계액으로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요?

A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여부는 각 인별로 보유하는 계좌의 잔액으로만 판단하고 부부, 직계존비속 등 동거가족의 계좌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보유한 경우 그 차명계좌의 잔액도 합산해야 하며,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는 각각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보유계좌잔액이 8억 원인 해외금융계좌를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각각 50%씩입니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 계좌잔액이 5억 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A 공동명의로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관계없이 공동명의로자 모두가 잔액을 8억 원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동명의로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로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다른 공동명의로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로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해외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선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인지요?

A 2013년 보유분을 신고하는 2014년부터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으로 주식선물 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도 신고대상 계좌입니다.



5억 원이 넘는 해외 비상장 주식 및 현금등가물(CD, 어음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신고대상인지요?

A 2013년 보유분을 신고하는 2014년부터는 해외 비상장 주식이나 현금등가물을 계좌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된 국내법인의 주식이나
주식예탁증서(DR)에 투자한 경우 신고대상인지요?

A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은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모두 평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도 신고대상입니다.



국내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5억 원 넘게 보유한 경우 신고대상인지요?

A 국내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⑤2호)



해외 증권회사에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펀드를 구매한 경우 신고대상인지요?

A 2013년 보유분을 신고하는 2014년부터 해외주식계좌에 보유한 모든 펀드는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해외금융계좌의 보유계좌잔액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각 해외금융계좌의 기준일 잔액을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준일 잔액은 각 계좌별로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최고잔액을 말하나요?

A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일’이란 연도 매월 말일 중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최고가 되는 날을 말하고, ‘기준일 잔액’이란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 보유한 적이 있는 모든 계좌가 신고대상인 것은 아니며, 또한 각 계좌별로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최고잔액을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율변동에 의하여 연도 매월 말일 중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날이 딱 한 번만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원화평가액 기준으로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해외예금계좌에 현금 5억 원이 있고, 해외채권계좌에 현금 4억 원 및 상장채권 20억 원이 있는 경우 신고하여야 할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얼마인가요?

A 2013년 보유분을 신고하는 2014년부터는 모든 해외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으로 위 금액이 2019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최고 평가금액이라고 한다면, 신고액은 예금 5억 원에 해외채권계좌 보유액 24억 원을 합한 29억 원입니다.



보유계좌잔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 시간과 각 국 현지에서 사용하는 시간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A 우리나라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국(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기준일(보유계좌의 매월 말일의 잔액의 합계가 최고가 되는 날)이 지나서 개설한 계좌도 신고대상인지요?

A 신고기준일이 지나서 개설한 계좌는 기준일 현재 보유한 계좌가 아니므로 신고대상 계좌가 아닙니다.



신고서상에 표시통화로 기재하는 ISO 국제통화코드는 무엇인가요?

- A** 통화의 이름을 정의하기 위해 국제 표준화 기구(ISO)가 정의한 국제 기준으로 3글자의 부호로 표시하며, 현재 제정된 주요 ISO 통화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 달러(USD), 유럽 유로(EUR), 홍콩 달러(HKD), 일본 엔(JPY), 중국 위안(CNY), 영국 파운드(GBP), 스위스 프랑(CHF), 캐나다 달러(CAD), 호주 달러(AUD), 싱가포르 달러(SGD), 베트남 동(VND) 등



환율조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A**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환율' 항목이나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의 [환율조회] '기간별 매매기준율'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좌 잔액은 외화로 신고해야 하는지 원화로 해야 하는지요?

- A** 신고서 서식의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매월 말일의 최고금액'은 원화평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신고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은 외화 및 원화평가액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고서 서식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요?

A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 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해외금융계좌신고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홈택스 > 법령정보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별표·서식 > 법령서식 > 국제조세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관할 세무서 기준이 되는 납세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A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이며,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입니다.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이며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요?

A 잔액증명 등 증빙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해외 출장을 갈 일이 있는데 대리인을 통해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수 있는지요?

A 해외금융계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과거부터 20억 원이 있는 해외계좌가 누락된 것이 2017년 7월에 발견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미신고로 보아 연도별로 부과되는 것인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는지요?

A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매년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때마다 부과되며, 연속으로 여러 해를 누락하였다면 각 연도마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보유액 20억 원을 과거부터 2017년까지 미신고한 경우 과태료

신고연도 과태료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과태료율	6억4천만 원	4%	4%	4%	10%	10%
과태료 부과액		8천만 원	8천만 원	8천만 원	2억 원	2억 원

※ 만약 자금출처 소명 요구에 대해 미소명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2015년부터는 미(거짓)소명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2015년 2억 원, 2016년 4억 원, 2017년 4억 원)



차명계좌 또는 공동명의 계좌에 대해 아무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A 차명계좌 또는 공동명의 계좌의 경우 관련자(명의자 및 실질 소유자, 공동명의자 각각)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도 관련자 모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A계좌 최고잔액을 10월 31일 11억 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추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고 누락한 B계좌가 발견되어 다시 계산해 보니 11월 30일이 A계좌 8억 원, B계좌 4억 원 총 12억 원으로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최고잔액이라면 과태료 부과대상금액은 얼마입니까?

A 4억 원입니다.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대상 계좌별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산정합니다.

관련예규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산정방법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특정 계좌의 해외금융계좌정보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 계좌별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산정합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88, 2014.5.2.]



미신고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나요?

A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따라 무자력자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를 위반한 내국법인에게도 미소명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A** 2019년 보유분을 신고하는 2020년부터 미소명 과태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거주자(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된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이 있나요?

- A** 신고의무 위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19①)

예를 들어 2016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를 2017년 6월 30일까지 미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36(재판) 및 §44(약식재판)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 규제법 §19②)



과태료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전에 관할 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드립니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통지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 시 사전통지서와 함께 20% 감경된 금액의 자진납부서를 함께 발송해 드리며, 이를 자진납부하지 않거나 제출하신 의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의견제출기간 내 20% 감경된 금액으로 자진납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없이 종결(질서위반행위 규제법 §18②)되며 이후 이미 종결된 과태료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며 이후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법원의 과태료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 과태료 부과통지 후 60일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므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행위위반자가 사망 또는 법인 합병시 과태료 납부의무가 승계되나요?

A 행위위반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 제기기간이 종료한 후 사망하거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사망한 경우 행정청은 그 상속재산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행위위반자가 법인인 경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제기기간이 종료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행정청은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24의2, 2011.7.6.부터 시행)



2020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4. 외국인을 위한 안내

Introduction for Foreigners

- 1. Introduction to the Reporting 78
- 2. Filing Forms 82



Overview

- From June 2011, residents or domestic corporations holding an overseas financial account opened at an overseas financial company, shall file information on the account if the aggregate balance exceeds KRW 500 million for any last day of a month of the relevant year.



Legal Basis

- Article 34~37 of the Act for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 Article 49~5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for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Who Must Report

- Subjects for disclosure are residents and domestic corporations.
 - principally, a resident is any individual who has his/her domicile in Korea or a place of residence for 183 days or more in Korea
 - If the nominal owner and the actual owner of an account are different, both are subject to report. If the account has joint owners, all of the owners are subject to report.
- Persons and entities exempt from reporting are as follows.
 - A foreign resident who has/had his/her domicile or place of residence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in total from ten years before the end of the relevant year subject to report.

- A Korean national residing abroad* in whose case the total period of having a residence in the Republic of Korea from one year before the end of the relevant year subject to report is not more than 183 days.

* as defined in sub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 Public organizations, financial companies, and other entities under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State.
- A person whose confirmation of information on his/her overseas financial account becomes available through a report by another person among the persons related to overseas financial accounts.

* A related person refers to the nominal and actual owners in cases of an account, etc. among the overseas financial accounts whose nominal holder and actual owner are different, and each of respective persons under a joint name in cases of a joint checking account



Objects for Disclosure

- Accounts subject to report : any bank, securities, securities derivatives or other financial instruments accounts which is opened in the name of an overseas financial company.
- Assets subject to report : all assets owned in the accounts subject to report.



Contents of Reporting

- Information on the identity of the account holder, such as name, address, etc;
- Information on the account held, such as account number, name of the financial company, the highest amount of the remaining balance of the account on the last day of each month.
- Information on a person related to the overseas financial account



How to Report

- Taxpayers subject to report should file the 「Report of Foreign Bank and Foreign Financial Accounts」 to the competent tax office in June 30.

* E-filing is also available in Hometax (<https://www.hometax.go.kr/>)



Revised and Past-Deadline Report

- A person who has reported information on his/her overseas financial account by the reporting deadline but has under-reported the amount thereof, may file a revised report on the information on his/her overseas financial account before the tax authority imposes an administrative fine.
- A person who has failed to report information on his/her overseas financial account by the reporting deadline, may report information on

his/her overseas financial account before the tax authority imposes an administrative fine.

- In such case, according to the filing date, up to 90% of the fine may be reduced*.

* Note: Taxpayers who have been contacted by NTS regarding the delinquent reporting will not be able to redeem the benefit of the reduced penalty.



Penalties for Not Reporting Foreign Financial Accounts

- Non-reporting or under-reporting will result in a penalty of up to 20% of the undisclosed amount.
- If a person fails to submit an explanation or submits a false explanation, he/she shall be punished by an administrative fine equivalent to 20% of the amount which has not been explained or falsely explained.
- Where the under-reported amount exceeds KRW 5 billion,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taxpayer shall be disclosed, and he/sh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of up to 2 years or a fine of 13%-20% of the under-reported amount.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on Foreign Financial Accounts

- Under the Article 36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the filed information will be kept confidential except for the cases listed in the Article 81-13 ①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 [FORM 21] <since Apr.6.2016>

(Page 1)

Calendar year for filing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Filing type	☐ Regular	Type of filer	☐ Resident
			☐ Amended		☐ Domestic Corporation
			☐ Fail to file		

1. Filer Information

① Name	(Korean)	② TIN of filer	
	(English)	③ Passport No.	
④ Address		⑤ Telephone No.	

2. Information on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held

⑥ Total number of accounts	the highest value on the last day of each month	
	⑦ As of (date)	⑧ the highest value(KRW)
	. . .	

3. Statemen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 (Unit: Foreign currency, Korean Won)

Account Serial Number (1)	⑨ Related Owner(s)		[] None, [] Joint owners, [] Foreign company(Wholly-owned) [] Nominal owner is different from the actual owner			
	⑩ Name of FFI			⑪ Type of account		
	⑫ Account Number			⑬ Currency Code		
	⑭ Name of Nominal Owner			⑮ TIN of overseas branch or office		
	⑯ Balance on the reference date	(Foreign Currency)			⑰ Date opened	. . .
		(Korean Won)			⑱ Date closed	. . .
	⑲ Address of FFI	Country	State	City	Number, Street, Suite No, etc	

I hereby declare that I report the information above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34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nd the information given above in this form is true.

Filing date . . .

Filer's Name (signature)

To Head Officer of () District Office

Agent	Name		TIN of Agent		TEL NO.	
-------	------	--	--------------	--	---------	--

Instructions

- ※ Enter the calendar year being reported, and check the appropriate box describing the filing type and the type of filer.
- ①~⑤: Provide filer information as of the date of reporting. If the filer is an individual resident, enter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f he/she does not have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then provide an alternative number(The report number of the domestic place of residence for a Korean national residing abroad or the Foreign registration number for a foreigner). If the filer is a corporation, enter the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If it does not have a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then put any other TIN(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 ①~③: If the filer is a resident, enter the full name of the filer both in English and Korean and the passport number which are shown in the passport.
 - ⑥Total number of accounts : Enter the total number of owned accounts and provide detailed information about each account in 「3. Statemen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 If the number of accounts subject to reporting is 2 or more, use the Statemen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starting with the second account in Page 3.
 - ⑦~⑧ : Provide the date on which a sum of balances of owned accounts reached the highest value on the last day of each month during the relevant year being reported. Enter the highest value of date thereof. Convert foreign currency into Korean won by using the official exchange rate at the end of the attributable date. A sum is an aggregated amount of balances that appear on owned accounts on a day. If no financial interest is paid to the accounts, you do not have to add the interest amount.
 - ⑨Related owner(s) : Check the appropriate box and provide more details in the Statement of Related Owner(s) (Page 4). If the account has both joint owner and actual owner, then check both boxes.
 - ⑩Name of FFI : Provide the name of FFI(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with which the account is held in full English name. If the English name is not available, provide a Korean name.
 - ⑪Type of account : Indicate the type of account such as cash, deposit, stock, derivatives, bond,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insurance, etc
 - ⑫Account number : Enter the account number which the financial institution uses to designate the account not including hyphens("-")
 - ⑬Currency code : Use a three-digit ISO currency code for ⑬Currency code.
* i.e.) US Dollar(USD), Euro(EUR), Hong Kong Dollar(HKD), Japanese Yen(JPY), Chinese Yuan(CNY), UK Pound(GBP), Swiss Franc(CHF), Canadian Dollar(CAD), Australian Dollar(AUD), Singapore Dollar(SGD), Vietnam Dong(VND), Indonesia Rupiah(IDR), Malaysia Ringgit(MYR)
 - ⑭Name of Nominal owner : Provide the name of nominal owner of the account in full English name. If the English name is not available, provide a Korean name. If the account owner is a foreign branch or liaison office, enter the name of the foreign branch or office.
 - ⑮ TIN of overseas branch : Enter the Code number of overseas branch which the competent tax office in Korea has given to identify the foreign branch/office.
 - ⑯Balance on the reference date : Put the amount both in the foreign currency and Korean won shown on the date of ⑦. In case there are related owners who have a certain amount of shares for the account, enter the balance amount shown on the account, not the amount of the share.
 - ⑰Address of FFI : Provide the complete mailing address of the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in English. If providing the English address is not possible, provide it in Korean.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Page 3)

Calendar year for filing		Statemen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Type of Filer	☐ Resident ☐ Domestic Co.		
						TIN of filer			
(Unit: Foreign currency, Korean Won)									
Account Serial Number ()	⑨ Related Owner(s)		☐ None, ☐ Joint owners, ☐ Foreign company(Wholly-owned) ☐ Nominal owner is different from the actual owner						
	⑩ Name of FFI					⑪ Type of account			
	⑫ Account Number					⑬ Currency Code			
	⑭ Name of Nominal Owner					⑮ TIN of overseas branch or office			
	⑯ Balance on the reference date		(Foreign Currency)			⑰ Date opened		. . .	
			(Korean Won)			⑱ Date closed		. . .	
	⑲ Address of FFI		Country	State	City	Number, Street, Suite No, etc			
Account Serial Number ()	⑨ Related Owner(s)		☐ None, ☐ Joint owners, ☐ Foreign company(Wholly-owned) ☐ Nominal owner is different from the actual owner						
	⑩ Name of FFI					⑪ Type of account			
	⑫ Account Number					⑬ Currency Code			
	⑭ Name of Nominal Owner					⑮ TIN of overseas branch or office			
	⑯ Balance on the reference date		(Foreign Currency)			⑰ Date opened		. . .	
			(Korean Won)			⑱ Date closed		. . .	
	⑲ Address of FFI		Country	State	City	Number, Street, Suite No, etc			
Account Serial Number ()	⑨ Related Owner(s)		☐ None, ☐ Joint owners, ☐ Foreign company(Wholly-owned) ☐ Nominal owner is different from the actual owner						
	⑩ Name of FFI					⑪ Type of account			
	⑫ Account Number					⑬ Currency Code			
	⑭ Name of Nominal Owner					⑮ TIN of overseas branch or office			
	⑯ Balance on the reference date		(Foreign Currency)			⑰ Date opened		. . .	
			(Korean Won)			⑱ Date closed		. . .	
	⑲ Address of FFI		Country	State	City	Number, Street, Suite No, etc			
Instructions									

Page (of)

1. This form is used only when the number of accounts subject to reporting is 2 or more, starting with the second account.
2. For each account, enter information for items ⑨ to ⑲.

■ [FORM 21] 〈since Apr.6.2016〉

(4쪽)

Calendar year for filing		Statement of Related Owner(s)		Type of Filer	[] Resident	
				Type of Filer	[] Domestic Co.	
				TIN of Filer		
Serial Number ()	Serial No. of Account		Type of Related Owner	[] Type1, [] Type2, [] Type3, [] Type4		
	Owner Information	Name	TIN of Related Owner			
		Address		TEL NO.		
Serial Number ()	Serial No. of Account		Type of Related Owner	[] Type1, [] Type2, [] Type3, [] Type4		
	Owner Information	Name	TIN of Related Owner			
		Address		TEL NO.		
Serial Number ()	Serial No. of Account		Type of Related Owner	[] Type1, [] Type2, [] Type3, [] Type4		
	Owner Information	Name	TIN of Related Owner			
		Address		TEL NO.		
Serial Number ()	Serial No. of Account		Type of Related Owner	[] Type1, [] Type2, [] Type3, [] Type4		
	Owner Information	Name	TIN of Related Owner			
		Address		TEL NO.		
Serial Number ()	Serial No. of Account		Type of Related Owner	[] Type1, [] Type2, [] Type3, [] Type4		
	Owner Information	Name	TIN of Related Owner			
		Address		TEL NO.		
Serial Number ()	Serial No. of Account		Type of Related Owner	[] Type1, [] Type2, [] Type3, [] Type4		
	Owner Information	Name	TIN of Related Owner			
		Address		TEL NO.		
Instruction						

- Page (of)
- This form is used only when there are related account owners (when "Joint owners" or "The nominal owner of the account is different from the actual owner" for item ⑨ of page 1 and 3 is checked).
 - If the number of accounts which have related account owners is 2 or more, provide information on the related account owners, starting with the owner serial number 1. If the number of related account owners for an account is 2 or more, provide above information for each owner.
 - "Serial number of account" is the same number in page 1 and 3.
 - "Type of Related owner" : Check the appropriate box describing the account owner type. Type 1-Joint owner; Type 2-The domestic company owns 100/100 of a foreign company's stocks with voting rights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Type 3-The filer is the nominal owner and he/she reports information of the actual owner; Type 4-The filer is the actual owner and he/she reports information of the nominal owner.



2020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5. 관련법령

-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88
- 2. 조세범 처벌법 98
- 3. 조세범 처벌절차법 및 시행령 99
- 4. 소득세법 및 시행령 · 시행규칙 102
- 5.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 106
- 6. 기타 관련 법령 112
- (참고) 탈세제보 안내 115

* 본 내용은 202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적용되는 내용만을 선택,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이므로 반드시 관련 법령의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https://taxi.hometax.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34조 【해외금융계좌신고】

①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3.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서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 각 호의 계좌를 말한다.

1.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계좌 외의 계좌로서 그 밖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

- ④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로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말한다)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 1.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3. 금융회사등
 - 4.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⑥ 신고의무자 판정기준,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및 실질적 소유자의 판단기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의3【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인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명을 요구받은 해당 신고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하 이 항에서 “소명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③ 신고의무자가 제37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① 제34조 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미신고 금액
 2. 과소 신고한 경우: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 ②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징수한다.
- ④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고 그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36조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 ① 세무공무원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7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 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한 자로서 과소 신고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3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할 수 있다.

- ②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3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의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9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 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 ②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금융회사등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 ④ 법 제34조 제5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말한다.
- ⑤ 법 제34조 제5항 제4호에서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34조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제50조 제7항에 따라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⑥ 법 제34조 제5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외국환중개회사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 제50조 【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매월 말일 보유계좌잔액은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하여 합산한다.
 1. 현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여탁증서: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산 외의 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③ 제2항의 해외금융계좌는 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하되, 다음 각 호의 계좌는 제외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으로서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금융계좌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및 이와 유사한 해외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퇴직연금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

가. 계좌가 해당 국가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제혜택 대상일 것

1) 계좌에 대한 납입금이 계좌보유자의 총소득에서 공제 또는 제외되는 경우

2) 계좌에 대한 납입금이 감면된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계좌에 대한 납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계좌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거나 감면된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나. 계좌와 관련하여 해당 외국 과세당국에 매년 정보 보고가 이루어질 것

다. 특정 퇴직연령 도달, 장애 또는 사망과 같은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인출이 허용되거나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인출을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

라. 계좌에 대한 연간 납입금이 5천만원 이내로 제한되거나 전체 납입금이 10억원 이내로 제한될 것. 이 경우 해외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신고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실질적 소유자는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주식을 포함한다)한 경우 그 내국인을 포함하되, 조세조약의 체결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아니한다.

1.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것에 한정한다)인 경우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

2.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3.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의 신탁업자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4.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5.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 해당 해외금융자산에 투자한 자
- ⑥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 ⑦ 신고의무자는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외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50조의2【소명방법 및 소명기간 연장】

- ① 법 제34조의3 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34조의3 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신고의무자가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는 신고의무 위반으로 소명을 요구받은 전액에 대하여 소명한 것으로 본다.
- ③ 법 제34조의3 제2항 단서에서 “신고의무자가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신고의무자가 화재·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2. 신고의무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3. 관련 장부·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0조의3【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 ①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음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정보
 2. 수정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
- ②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기한 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④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0
 2.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 2억원 + 해당 금액 중 2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15
 3.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 초과인 경우: 6억 5천만원 + 해당 금액 중 50억원을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20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제2항, 법 제31조의4제1항 및 법

제35조제1항·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감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신고기한"이라 한다)이 지난 후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90

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라. 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초과 4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30

2. 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이 90

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70

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라. 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30

-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경미한 착오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보정 자료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19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⑧ 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계좌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에 추가로 부과하는 과태료는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할 과태료에서 이미 부과한 과태료를 뺀 금액을 부과한다.

⑨ 법 제35조제2항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천재지변, 화재·재난, 도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증명서류 등이 없어서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및 해외금융계좌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조세범 처벌법

○ 제1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제18조 【양벌 규정】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위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 제13조 【조세범칙처분의 종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 제15조 【통고처분】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또는 몰취(沒取)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2.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가 그 통고에 따라 납부신청을 하고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매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그 물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고발】

-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5조 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 제12조 【통고처분】

-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마친 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세범칙사건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조세범칙행위자 및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별로 통고서를 작성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5조 제4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별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위반횟수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해당 조세범칙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조세범칙행위로 통고처분이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바. 조세범칙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벌금상당액을 산정한다.

- 1) 「조세범 처벌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조세범칙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상당액 중 가장 무거운 벌금상당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각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2)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상당액을 합산한다.
- 3) 1)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와 2)에 따른 조세범칙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상당액을 산정하여 합산한다.

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벌금상당액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산정된 벌금액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산정된 벌금액의 상한을 벌금상당액으로 본다.

2. 개별기준

조세범칙행위	벌금상당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처.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의 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6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소득세법

○ 제1조의2【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居所(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 제2조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사유와 입증방법】

- ① 영 제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단기 관광
 2. 질병의 치료
 3. 병역의무의 이행
 4.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 ② 영 제4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서 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입국 사유와 기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단기 관광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권, 영수증 등 입국기간 동안 관광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질병의 치료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입국기간 동안 진찰이나 치료를 받은 것을 입증하는 자료
 3. 제1항 제3호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병적증명서 등 입국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4. 제1항 제4호에 따른 친족 경조사 등 그밖에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

국세기본법

○ 제81조의13【비밀 유지】

-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2. 제1항제6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신고는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5조의5【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국세추징명세, 포탈세액,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국세징수법」 제7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 여부를 의결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국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 ④ 국세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 대상자에게 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 이행,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이행 또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 2천만원

- ⑥ 법 제84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 (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3호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1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6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⑧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법 제84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른 포상금

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금액이 납부되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날

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

- ⑨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㉔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제66조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① 법 제8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가. 위원회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2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의 위원 중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1. 국세청장이 국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8명

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2명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제2항제1호의 위원 5명과 같은 항 제2호의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법 제85조의5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자(이하 이 항에서 "명단공개대상자"라 한다)인 경우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4. 명단공개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

5. 명단공개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명단공개대상자에 관한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신청·청구에 관여하였던 경우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명단공개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7. 그 밖에 명단공개대상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⑦ 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⑫ 법 제85조의5 제4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⑮ 법 제85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신고의무 위반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으로 한다.
- ⑯ 국세청장이 제15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법 제85조의5 제5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경우 공개일부터 5년간 공개한다. 다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과태료 및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단을 계속하여 공개한다.

법인세법

○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賦金)·계금(契金)·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 【금융회사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삭제 <2019.6.25>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9. 삭제 <2008.7.29>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91조제2항제1호의 신고사항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신고 또는 확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2.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13. 그 밖에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1 개요

국세청은 해외탈세제보의 접수·처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탈세감시체계를 활성화 시키고, 국제거래를 이용한 소득 탈루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탈세 제보대상 유형

- 외국인(또는 외국법인) 명의로 해외에서 자산을 은닉한 사항
- 해외현지법인 등을 통해 소득을 국외로 부당하게 이전한 사항
- 국내·국외 발생소득을 누락하고 이를 국내 및 국외에 은닉한 혐의
- 해외투자를 이용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한 사항
- 해외에서 호화사치·도박 등을 일삼는 자에 관한 사항
- 세금 등과 관련하여 해외교민·언론 등에 알려진 내용
- 세금문제 등으로 해외교민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사항
- 기타 해외정보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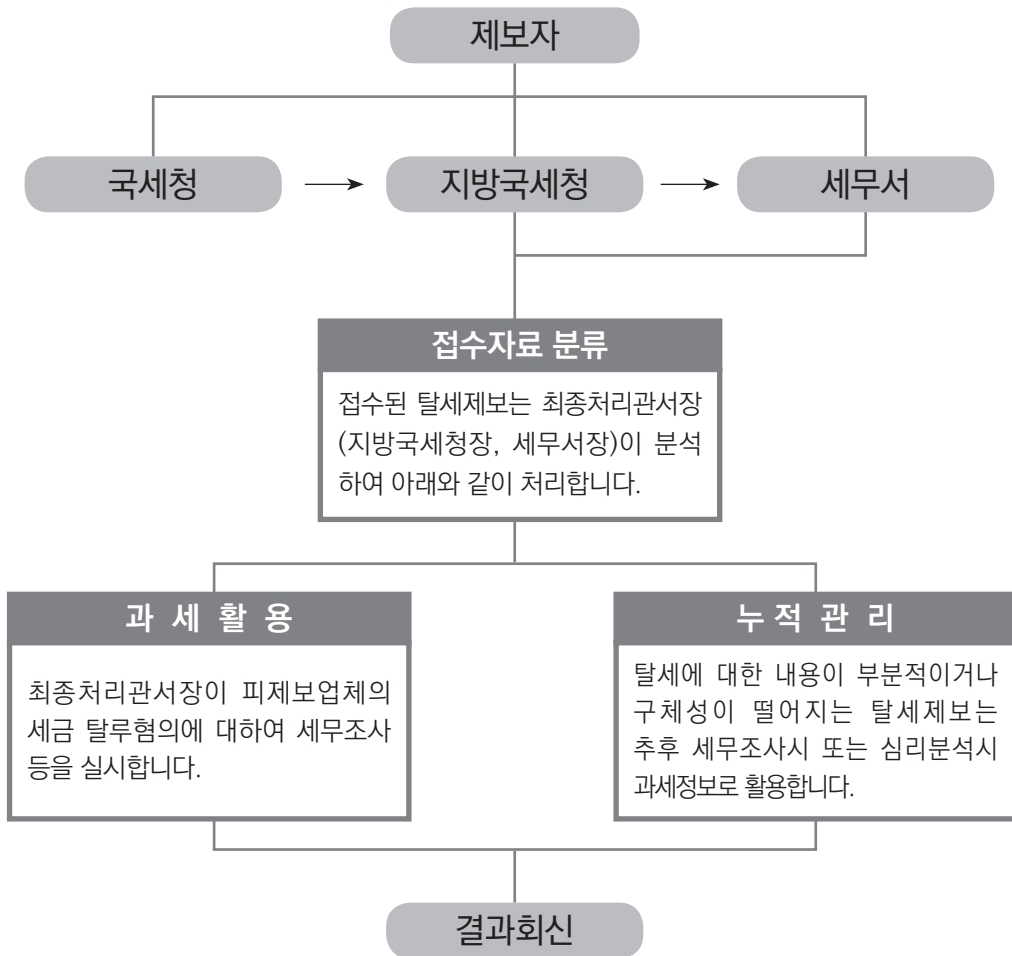
2 해외탈세제보 신고방법

해외탈세제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합니다.

- 인터넷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탈세제보 ⇒ 탈세제보/차명계좌신고 등 ⇒ 조세탈루
- 서 면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국제조사과 (우편번호 30128) 8-14,
Guksecheong-ro,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Korea 30128 National Tax
Service, International Investigation Division
- 전 화 : +82-44-204-3687 ○ Fax : +82-44-216-6090

3 해외탈세제보 처리절차 및 비밀보장

처리절차 및 회신



비밀보장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에 따라 신고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유지됩니다.

4 탈세제보포상금 안내

탈세제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성실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탈세제보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안내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안내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에 따른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면 제보자는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 유형]

-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포상금 지급액(지급률)

탈루세액 등	지급률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100분의 15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7천 5백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 원 초과	2억 2천 5백만 원 + 20억 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 포상금 지급액은 최대 40억 원 한도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Foreign Financial Accounts Reporting

발행일 : 2020년 5월

발행처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집필·편집 :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최인순

집필·편집 : 사무관 김주연

집필·편집 : 국세조사관 한현섭

집필·편집 : 국세조사관 류명지

인쇄처 : 두합인쇄(☎02-2285-0530)

- * 이 책자는 대한민국 세법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세법과 이 책자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세법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본 책자를 복사 및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044-204-2884)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